

수원지방법원 2015. 3. 26 선고 2014가합73353 판결 [보증금 청구]

전 문

원고광양시새마을금고

피고서우로이엘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3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29,611,730원 및 그 중 682,000,000원에 대하여 2015. 1. 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재판장판사안성준

판사나경

판사이상현

별지